제33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6. 10. 13.(화)

달 성 군 의 회

- 목 차 -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5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6. 달성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13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 16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22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 27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76호

○ 제 출 일: 2026년 9월 28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2. 제안사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의 인용 제명·조문 및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제명·조문 및 용어 변경사항 반영

- 제명 변경
- 조문 변경
- 용어 변경

4.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회계법」,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5. 검토의견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용 법령의 제명과 조문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8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폐지되거나 다른 법률로 옮겨진 조문을 조례에서 계속 인용할 경우 처분의 근거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는 필수적입니다. 관련하여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은 조문내용의 변경 없이 인용된 법령과 용어를 현행화 하려는 사항입니다.

○ 향후, 이번 정비 대상 외에도 상위법령 개정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소관 부서별로 적기에 정비하는 체계를 지속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종합적으로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 간 정합성과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77호

○ 제 출 일: 2026년 9월 28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2. 제안사유

○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의 다양한 직무분야의 전문직 자문 기능 수행능력을 높이고자 위원의 인력자원(Pool)을 늘리고 항번호가 잘못 기재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인원 구성 증원(안 제4조제1항)

○ 중복된 항번호 수정(안 제12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건축기본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늘려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확충하고, 조례 제12조의 항번호 오기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공공건축의 기획 · 설계 · 시공 단계에 자문하는 기구로, 개최 실적이 2024년 1회, 2025년 4회, 2026년 9월 현재 6회로 매년 늘고 있으며 현재 위촉위원이 49명(50명 이내)으로, 건축 · 토목 · 조경 · 도시디자인 · 조명 · 정보통신 · 교통 · 소방 등 13개 분야에 걸쳐 있어 건축 및 조경분야를 제외하고 위원이 1~2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문 수요 증가와 분야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풀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됩니다.

○ 다만, 위원 정수를 현 위촉인원의 약 2배로 확대하는 만큼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 수가 늘어나면 소위원회 구성 시 특정 위원에게 참여가 편중되거나 선정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위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자문위원이 늘어나는 만큼 자문 대상 사업과의 이해관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제척 · 기피 · 회피 규정을 엄격히 운영해야 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위원 확대 시 성별 균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건축 자문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분야별 전문 인력풀을 확충하고 조문 오류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78호

○ 제 출 일: 2026년 9월 28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2. 제안사유

○ 달성군 근로자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6. 12. 31.에 만료 예정으로 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종사자수	비 고
근로자복지관	논공읍 논공로 697-13	대지 991㎡, 건물 지상3층(927㎡)	3명	

○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근로자 상담 : 법률, 근로조건, 회계 상담 등
- 관내 근로자 고충해소를 위한 노동상담실 운영

- 근로자에 대한 각종 교양·교육 사업
- 근로자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훈련
- 근로자를 위한 각종 편익시설 제공

○ 위탁기간: **2년(2027. 1. 1. ~ 2028. 12. 31.)**

○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선정 심의**

○ 성과평가 결과: **적정(평균 88점)**

4.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근로복지기본법」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5.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달성군 근로자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 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 달성군 근로자복지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시설인 동시에, 이용자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현장 대응 등 민간의 전문성과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무로 판단되며, 민간위탁 시 위탁협약과 성과 평가를 통해 성과 중심의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공공성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복지관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에서 재위탁과 재계약을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 수탁기관의 성과평가가 평균 88점으로 운영 성과는 적정한 수준이나, 2007년 3월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운영함에 따라 운영의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반면, 혁신성 저하와 관행적 운영구조가 고착될 우려도 있습니다.

○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기존 수탁기관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관을 포함한 복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능력과 사업계획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여 보다 적합한 운영주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이번 재위탁은 공개경쟁을 통해 다양한 전문기관의 운영계획과 역량을 비교·검증하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 새로운 복지사업 발굴 및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80호

○ 제 출 일: 2026년 9월 28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2. 제안사유

○ 조례에 위임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통합지원협의체와 자문단 운영 방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통합돌봄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조문 및 통합지원협의체 규정에 상위법 위임근거 및 인용조문 명시(안 제1조, 안 제11조)

○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법 변경(안 제11조)

○ 자문단 수당 지급 규정 기재(안 제12조)

4. 관계법령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통합지원협의체와 자문단의 운영 방식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안 제1조와 안 제11조제1항은 돌봄통합지원법과 같은 법 제20조를 위임 근거로 명시하는 것으로, 위임 조례로서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자 함입니다.

○ 안 제11조는 돌봄통합지원법 제20조제1항 후단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 사항을 달성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사 협의체의 중복 설치를 막고 기존 민·관 협력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으며,
안 제12조제1항과 제2항은 협의체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종합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통합지원협의체와 자문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81호

○ 제 출 일: 2026년 9월 28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2. 제안사유

○ 법제처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정비 권고에 따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개정 권고에 따라 사용료(대관료)반환에 관한 위약금 부과를 체육시설업 반환기준에 준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조항을 삭제(안 제10조제2항)

○ 사용료(대관료) 반환 기준을 개정

(안 제13조제3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민법」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면책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 반환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현행 제10조제2항은 허가 취소나 사용중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변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배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조항을 삭제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달성군의회에서는 법제처의 202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권고에 따라 공공시설 조례의 면책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최근 여러 차례 심사한 바 있으며, 또한 사용료 반환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추어 정비한 사례도 있어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비 흐름과 일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 기	조 례	주요 내용
제322회 정례회 (2025. 11.)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사용료 반환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에 따라 정비(안 제12조)
제324회 임시회 (2026. 3.)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면책 규정 삭제(안 제34조)
제324회 임시회 (2026. 3.)	비슬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조항 삭제(안 제9조)
제325회 임시회 (2026. 4.)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면책 조항 삭제(안 제14조), 사용료 반환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13조)
제329회 정례회 (2026. 9.)	관광진흥 조례	셔틀버스 이용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면책 규정 삭제(안 제25조)

○ 현행 제3호의 “1일당 10%씩 90%까지 반환”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감액하는지 문언상 분명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산식을 명확히 하여 반환액 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사업자 귀책 시 10%를 가산하여 반환하고 소비자 귀책 시 10%를 공제하는 체육시설업 분쟁해결기준과도 부합합니다.

○ 종합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면책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 반환 기준을 소비자 보호 기준에 맞게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달성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82호

○ 제 출 일: 2026년 9월 28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2. 제안사유

○ 가창면 최정산에 위치한 舊 군사시설(위성관측소)의 역사 및 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주제공원을 조성하여 최정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여가 및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 고
신설	최정산 산림휴양공원	산림휴양공원	가창면 주리 산132-9 일원	33,828	

○ 결정 사유: 최정산의 우수한 산림환경과 기조성된 시설을 활용한 체험·교육·휴양 기능이 복합된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고, 기조성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하고자 함.

4.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5. 검토의견

○ 가창면 최정산에 위치한 구(舊) 군사시설(위성관측소)의 역사 및 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주제공원을 조성하여 최정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여가 및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가창면 주리 산132-9번지 일원을 최정산 산림휴양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은 산림자원의 보전과 휴양·치유·관광 기능을 결합하여 달성군의 대표적인 산림휴양 거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히, 기존의 최정산 힐링숲 조성사업, 최정산 고산정원 조성사업 최정산 습지 복원사업을 비롯한 등산로·둘레길 사업 등과 연계하여 산림의 보전과 휴양이 어루러진 종합적인 산림복지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시공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제6조는 도시공원의 주제공원을 산림휴양공원 등으로 세분하여 정의하고 있어 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은 관련 법규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본 시설 결정의 구역의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지목은 임야, 소유권은 공유지(대구시 소유)로서 본 시설결정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대상지 구역경계는 지적경계 및 기조성된 산책로와 최정산 힐링숲, 고산정원 조성 사업의 범위를 고려하여 일부 겹치거나 포함되도록 설정하였는바, 이는 적정한 시설의 규모라 판단됩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면 해당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되지 않으면 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조속히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산사태·산불 등 재해 대응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힐링숲, 고산정원, 습지복원, 등산로·둘레길 등 기존 사업을 공원조성계획에 유기적으로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한 만큼 군의회에 지속적인 보고와 의견청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83호

○ 제 출 일: 2026년 9월 28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2. 제안사유

○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관련 제도가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 법체계를 전제로 규정한 경비 부과·징수 및 농지개량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관계법령

○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어촌정비법」

5.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관련 제도가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 법체계를 전제로 규정한 경비 부과·징수 및 농지개량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본 조례의 제정(1969. 2. 22.) 당시 농업용수의 개발은 농지개량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법체계에서 농업용수 개발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기 위한 근거로 제정되었으나, 이후 「농촌근대화촉진법」 폐지를 비롯한 기존 농업생산기반 관련 법체계가 현재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통합·전환되었습니다.

○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에서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에서 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제6조~제15조의2), 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제16조~제24조), 제3절 환지 및 교환·분할·합병 등(제25조~제51조)으로 3개 절, 50개 조항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폐지조례안은 과거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의 시행 근거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

되며, 폐지된 상위 법체계를 전제로 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현행 「농어촌정비법」과 자치법규 간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폐지조례안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2024년 조례 입법평가 평가결과 개선과제'에도 해당 조례가 폐지대상 조례로 평가되었습니다.

※ (붙임1) 2024년도 조례 입법평가 평가결과 개선과제 참조
(붙임2)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 조례 폐지 사례

(붙임1)

2024년도 조례 입법평가 평가결과 개선과제

1. 개선과제 대상조례: 총 23건

유형 1 (예산)	유형 2 (법적 적합성)		유형 3 (위원회 운영)		유형 4 (그 밖)
예산 편성 및 집행 적정성	상위법령 미반영(제개정)	사문화 (폐지)	정비 (비상설화 등)	재검토	조례 이행
자율정비	13	4	2	4	자율정비

2. 대상과제

구분	유형 (분야)	개선권고 과제명	번호	대상조례	주관부서	비고
1	예산	1-1 예산편성	1-1-1	주관부서 자율 정비	-	
		1-2 예산집행	1-2-1	주관부서 자율 정비	-	
2	법적 적합성	2-1 상위법령 미반영 (제개정)	2-1-1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기획예산과	
			2-1-2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행정과	
			2-1-3	달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2-1-4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2-1-5	달성군 반 운영 조례	자치행정과	
			2-1-6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	농업정책과	
			2-1-7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정책과	
			2-1-8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사회복지과	
			2-1-9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행복나눔과	
			2-1-10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	문화예술과	
			2-1-11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산림과	
			2-1-12	달성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건과	
			2-1-13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농촌지도과	
		2-2 사문화 (폐지)	2-2-1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기획예산과	
			2-2-2	**달성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도시정비과**	
			2-2-3	**달성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	**도시정비과**	
			2-2-4	**달성군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 조례**	**도시정비과**	
3	위원회 운영	3-1 정비	3-1-1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기획예산과	
			3-1-2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기획예산과	
		3-2 재검토	3-2-1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자치행정과	
			3-2-2	달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자치행정과	
			3-2-3	달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3-2-4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	관광과	
4	그 밖	4-1 시행규칙	4-1-1	주관부서 자율 정비	-	

(붙임2)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 조례 폐지 사례(12건)

구분	조례명	폐지일
청송군	폐 청송군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	2026-09-11
전라남도	폐 전라남도 농업용수 공급 지원 조례	2026-07-31
구미시	폐 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2024-02-07
영덕군	폐 영덕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2023-12-27
울릉군	폐 울릉군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	2023-12-26
경산시	폐 경산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2023-12-06
의성군	폐 의성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2023-11-10
울진군	폐 울진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2017-07-18
봉화군	폐 봉화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2016-08-01
예천군	폐 예천군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	2015-10-30
영양군	폐 영양군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2015-10-08
칠곡군	폐 칠곡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2012-04-24

※ 관련 언론보도 자료

“ ‘유령 조례’ 지적에 대구 기초단체 잇단 정비”

달성군·남구의회, 폐지·개정…군위군은 전수조사
서구·수성구도 재점검…동구, 순차적으로 정비 중
중구 “문제없다”…북구는 “특정 못했고 계획 없어”

대구지역 일부 기초의회와 집행부가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이른바 '유령 조례'(영남일보 2026년 6월9일자 6면 보도)에 대한 재점검과 개정에 나섰다.

6일 대구 9개 구·군 및 구·군의회에 따르면 달성군과 남구는 지적된 조례를 각각 오는 9월과 10월 폐지 및 개정하기로 했고, 군위군도 올해 전수조사를 거쳐 내년에 적용키로 했다. 서구와 수성구는 전반적인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앞서 영남일보는 대구경북 33개 광역·기초의회 조례를 전수 분석해 10년 이상 개정되지 않고 조항이 5개 이하이면서 다른 조례에서 인용된 횟수가 3회 이하인 조례 48건을 정비 필요 대상으로 지적했다. 대구에서는 중구 3건, 동구·수성구 각 2건, 서구·남구·북구·달성군 각 1건이 확인됐다. 이들 조례에서는 폐지된 법령이나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 용어 등이 발견됐다.

영남일보의 지적에 따라 달성군은 지난 2000년 이후 26년간 방치했던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달 중 집행부에서 조례 폐지안을 마련하고 9월 중 열리는 의회 회기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는 '부역현품' 등 낡은 용어와 현행 법체계에 맞지 않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준호 달성군 농업시설2팀장은 "이 조례가 농어촌정비법 제9조를 근거로 하는데, 법과 이어지려면 제10조로 바뀌어야 하고 옛날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문구 수정도 필요하다"며 "다만, **달성군은 2000년 이후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향후 계획도 없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라고 판단해 폐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7일 열리는 의정간담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9월2일부터 열리는 의회에서 조례 삭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후단 생략 ……

영남일보(권혁준·최시웅·구경모(대구)·조윤화 기자) / 2026. 8.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84호

○ 제 출 일: 2026년 9월 28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2. 제안사유

○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개량조합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자치단체 조례제정의 근거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관계법령

○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지개량조합법」

5. 검토의견

○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개량조합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자치단체 조례제정의 근거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폐지된 「농촌근대화촉진법」은 농지개량조합을 설립하여 농지개량시설을 등록·관리·운영하도록 하는 체계를 두었고, 조합구역의 편입·제외와 관련하여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이라는 규정 자체가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개량조합법」을 근거로 한 것으로 농지개량조합 중심의 기존 제도가 폐지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체계가 「농어촌정비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 조례의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조례가 규정하는 개념 자체가 현행 법령상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 「농어촌정비법」의 개정 과정에서 기존의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합·전환되었고, 법령상 각종 농지개량시설의 관리 주체도 기존의 농지개량조합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기반공사 [1]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시설 관리체계를 전제로 제정되었으나, 이후 농지개량조합 제도가 폐지·전환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가 「농

1) 이후 2005년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농촌개발 기능을 강화. 2008년에는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농어촌 전반의 개발·관리 및 지원기관으로 확대

어촌정비법」에 따른 새로운 법체계로 정비됨에 따라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및 현행 「농어촌정비법」과의 법체계 정합성 확보의 측면에서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2024년 조례 입법평가 평가결과 개선과제'에도 해당 조례가 폐지대상 조례로 평가되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 (붙임1) 2024년도 조례 입법평가 평가결과 개선과제 참조
(붙임2)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 폐지 사례

(붙임1)

2024년도 조례 입법평가 평가결과 개선과제

1. 개선과제 대상조례: 총 23건

유형 1 (예산)	유형 2 (법적 적합성)		유형 3 (위원회 운영)		유형 4 (그 밖)
예산 편성 및 집행 적정성	상위법령 미반영(제개정)	사문화 (폐지)	정비 (비상설화 등)	재검토	조례 이행
자율정비	13	4	2	4	자율정비

2. 대상과제

구분	유형 (분야)	개선권고 과제명	번호	대상조례	주관부서	비고
1	예산	1-1 예산편성	1-1-1	주관부서 자율 정비	-	
		1-2 예산집행	1-2-1	주관부서 자율 정비	-	
2	법적 적합성	2-1 상위법령 미반영 (제개정)	2-1-1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기획예산과	
			2-1-2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행정과	
			2-1-3	달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2-1-4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2-1-5	달성군 반 운영 조례	자치행정과	
			2-1-6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	농업정책과	
			2-1-7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정책과	
			2-1-8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사회복지과	
			2-1-9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행복나눔과	
			2-1-10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	문화예술과	
			2-1-11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산림과	
			2-1-12	달성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건과	
			2-1-13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농촌지도과	
		2-2 사문화 (폐지)	2-2-1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기획예산과	
			2-2-2	**달성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도시정비과**	
			2-2-3	**달성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	**도시정비과**	
			2-2-4	**달성군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 조례**	**도시정비과**	
3	위원회 운영	3-1 정비	3-1-1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기획예산과	
			3-1-2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기획예산과	
		3-2 재검토	3-2-1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자치행정과	
			3-2-2	달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자치행정과	
			3-2-3	달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3-2-4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	관광과	
4	그 밖	4-1 시행규칙	4-1-1	주관부서 자율 정비	-	

(붙임2)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 폐지 사례(36건)

구분	조례명	폐지일
서천군	폐 서천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2020-07-10
신안군	폐 신안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2017-03-02
담양군	폐 담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2015-12-30
남해군	폐 남해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2015-07-06
동해시	폐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2015-06-19
칠곡군	폐 칠곡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2012-04-24
당진시	폐 당진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2012-01-01
공주시	폐 공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2011-11-15
의왕시	폐 의왕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2011-03-08
수원시	폐 수원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2011-02-07
창원시	폐 마산시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2010-07-01
부천시	폐 부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2008-08-11
광명시	폐 광명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2008-06-16
남양주시	폐 남양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2008-03-27
여주시	폐 여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2007-11-15
논산시	폐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2005-05-31
금산군	폐 금산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2005-05-20
연천군	폐 연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2003-01-18
김해시	폐 김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2003-01-17
창원시	폐 창원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2001-07-06
하동군	폐 하동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2001-04-23
함양군	폐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2001-02-12
영월군	폐 영월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2001-01-15
창원시	폐 진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2000-11-17
산청군	폐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	2000-10-27
대전광역시	폐 대전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	2000-09-08
고양시	폐 고양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2000-08-09
울산광역시	폐 울산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	2000-06-15
고성군	폐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1999-11-13
진주시	폐 진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농지외개량시설관리조례	1999-09-01
평택시	폐 평택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1999-08-23
과천시	폐 과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1999-06-12
의정부시	폐 의정부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1997-10-30
광주광역시	폐 광주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1996-08-15
화순군	폐 화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	1996-05-09
파주시	폐 파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1996-03-01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85호

○ 제 출 일: 2026년 9월 28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2. 제안사유

○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농지개량사업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관련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현행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관계법령

○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어촌정비법」

5. 검토의견

○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농지개량사업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관련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현행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폐지된 「농촌근대화촉진법」은 농지의 개량·개발·보전 및 집단화 등을 통해 농업생산력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로, 당시 제2조에서 관개·배수시설, 농업용 도로, 구획정리, 개답·개전, 간척·매립, 농지 재해복구 등을 포괄하여 '농지개량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농업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 또는 토지소유자를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1995. 12. 29.)되면서 「농촌근대화촉진법」을 폐지하였고, 이후 「농지개량조합법」 또한 폐지(2000. 1. 1.)되면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농어촌용수 개발, 경지정리·배수개선·농업생산기반시설 개량·보수, 간척·매립·개간, 영농시설 확충, 농지 토양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소유자 등을 규정하여 종전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는 당초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하여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자치법규였으나, 현재에는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폐지된 법률을 근거로 한 자치법규를 계속 존치할 경우 현행 법령체계와의 법적 정합성이 저하되고, 조례의 적용 및 집행 과정에서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과 행정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및 현행 「농어촌정비법」과의 법체계 정합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2024년 조례 입법평가 평가결과 개선과제'에도 해당 조례가 폐지대상 조례로 평가되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 (붙임1) 2024년도 조례 입법평가 평가결과 개선과제 참조
(붙임2)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 사례

(붙임1)

2024년도 조례 입법평가 평가결과 개선과제

1. 개선과제 대상조례: 총 23건

유형 1 (예산)	유형 2 (법적 적합성)		유형 3 (위원회 운영)		유형 4 (그 밖)
예산 편성 및 집행 적정성	상위법령 미반영(제개정)	사문화 (폐지)	정비 (비상설화 등)	재검토	조례 이행
자율정비	13	4	2	4	자율정비

2. 대상과제

구분	유형 (분야)	개선권고 과제명	번호	대상조례	주관부서	비고
1	예산	1-1 예산편성	1-1-1	주관부서 자율 정비	-	
		1-2 예산집행	1-2-1	주관부서 자율 정비	-	
2	법적 적합성	2-1 상위법령 미반영 (제개정)	2-1-1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기획예산과	
			2-1-2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행정과	
			2-1-3	달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2-1-4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2-1-5	달성군 반 운영 조례	자치행정과	
			2-1-6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	농업정책과	
			2-1-7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정책과	
			2-1-8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사회복지과	
			2-1-9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행복나눔과	
			2-1-10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	문화예술과	
			2-1-11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산림과	
			2-1-12	달성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건과	
			2-1-13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농촌지도과	
		2-2 사문화 (폐지)	2-2-1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기획예산과	
			2-2-2	**달성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도시정비과**	
			2-2-3	**달성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	**도시정비과**	
			2-2-4	**달성군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 조례**	**도시정비과**	
3	위원회 운영	3-1 정비	3-1-1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기획예산과	
			3-1-2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기획예산과	
		3-2 재검토	3-2-1	달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자치행정과	
			3-2-2	달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자치행정과	
			3-2-3	달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3-2-4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	관광과	
4	그 밖	4-1 시행규칙	4-1-1	주관부서 자율 정비	-	

(붙임2)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 사례(35건)

구분	조례명	폐지일
구미시	폐 구미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2024-02-07
당진시	폐 당진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2020-11-13
거제시	폐 거제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2016-11-29
신안군	폐 신안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2016-11-15
횡성군	폐 횡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2016-10-13
봉화군	폐 봉화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2016-08-01
진천군	폐 진천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2015-12-30
영양군	폐 영양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2015-10-08
동해시	폐 동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2015-06-19
속초시	폐 속초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2015-05-01
하동군	폐 하동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2014-10-31
칠곡군	폐 칠곡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2012-04-24
대구광역시	폐 대구광역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2012-03-30
당진시	폐 당진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2012-01-01
창원시	폐 마산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2010-07-01
삼척시	폐 삼척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2009-12-30
고성군	폐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2008-08-11
남양주시	폐 남양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2008-03-27
기장군	폐 부산광역시기장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2008-03-05
철원군	폐 철원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2004-07-09
김해시	폐 김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2003-01-07
군포시	폐 군포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2001-01-31
영월군	폐 영월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2001-01-15
영덕군	폐 영덕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2001-01-13
고양시	폐 고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2000-08-09
평택시	폐 평택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1999-08-23
과천시	폐 과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1999-06-12
창원시	폐 창원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1999-04-29
의정부시	폐 의정부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1997-10-30
부천시	폐 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1997-08-01
광주광역시	폐 광주광역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1996-08-15
파주시	폐 파주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1996-03-01
대전광역시	폐 대전광역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1996-01-18
인천광역시	폐 인천직할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1983-11-26
진주시	폐 진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1900-01-01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86호

○ 제 출 일: 2026년 9월 28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2. 제안사유

○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정비 권고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농기계임대사업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 삭제
(안 제13조제4항 삭제)

○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 1)

4.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정비 권고에 따라 공공시설(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을 정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3조제4항을 삭제하는 사항은 법제처 202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추진 결과 정비 권고에 따른 것으로 현행 조례 제13조제4항은 공공시설 운영 수탁자 및 사용자 등에게 해당 공공시설을 운영 또는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 등의 책임을 전부 전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2]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해당 면책규정을 삭제하여도 수탁자·사용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의 손해배상법리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본 개정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별표1(제10조제1항 관련)의 개정사항은 2025년 대구광역시 정부합동감사 시 '**농기계 임대료 기준 조례 반영 부적정**'으로 지적되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 제2항[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상의 임대료 기준에 부합하도록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을 지시받은 사항입니다.

2)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 산정방식 등 임대료 기준,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농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료 기준보다 낮게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임대료 기준을 반영하여 임대료 산정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의 [별표1]의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1의2] 1호나목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라는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별표 1의2] 1호가목에서 정한 임대료 산정 기준보다 **-15% 정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붙임1) 임대료 산정기준 적용률 참조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료를 상향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사업 시행기준과 우리 군 조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임대료 산정기준의 법적·행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정비 권고에 따라 공공시설(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임대료 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임대료 산정의 법적 정합성과 형평성을 갖추는 한편,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현재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 농자재·에너지 등 생산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농가의 경영 부담과 소득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의 상승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조례 제11조의 임대료 감면 대상의 확대를 통해 지역 농민의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붙임2) 농기계 임대료의 감면 유형별 사례 참조

(붙임1)

임대료 산정기준 적용률

농업기계 구입가격	시행규칙 상 임대료	달성군 임대료	시행규칙 대비 산정요율
1) 100만원 미만	10,000원	9,000원	90.00%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000원	10,000원	83.33%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000원	13,000원	86.67%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000원	17,000원	89.47%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000원	20,000원	86.96%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8,000원	24,000원	85.71%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2,000원	28,000원	87.50%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6,500원	32,000원	87.67%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41,000원	35,000원	85.37%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6,000원	40,000원	86.96%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65,000원	56,000원	86.15%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85,000원	73,000원	85.88%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110,000원	94,000원	85.45%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0,000원	111,000원	85.38%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60,000원	140,000원	87.50%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85,000원	160,000원	86.49%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70,000원	87.18%
18) 4,500만원 이상	210,000원	180,000원	85.71%

(붙임2)

농기계 임대료의 감면 유형별 사례

감면 유형	감면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초생활 수급자	50%	**달성군**, 영천시, 김제시, 평창군, 횡성군, 양양군, 남원시, 원주시, 상주시
차상위계층	50%	양양군, 하동군, 영광군
국가유공자	50%	**달성군**, 영천시, 기장군, 상주시, 횡성군
장애인	50%	양양군, 기장군, 상주시, 태백시, 남원시, 하동군, 영광군
귀농·귀촌인	50%	영천시, 울진군, 상주시, 영광군, 함양군
한부모가족	50%	홍천군, 횡성군, 태백시, 상주시, 영광군
다자녀가정	30~50%	하동군, 철원군, 울진군, 영광군, 기장군, 함양군
2자녀 이상	50%	함양군, 거창군, 영광군
병역명문가	50%	인천광역시, 상주시, 태백시, 충주시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50%	광주광역시, 상주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1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2감면.
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전액 면제.